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종전의 대수선과 특수한 부대설비 설치를 개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에 있어 건축물의 개념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종전에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던 것을 법에서 과세대상의 대강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 3) 개정조문 및 해설

#### ○ 건축물의 개념정의 - 법제104조제4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sup>23)</sup>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등의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 되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근거를 두고 있다.

#### <법 제104조의 제4호>

4. 建築物：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土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종전의 특수한 부대설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종전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개정 지방세법상의 개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